
입 법 정 보

2019-24호



목 차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5
4.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6
6.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6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7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8
10.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
1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10
1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
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3
1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5
16.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6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18.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지급의 용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7
1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7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8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8
2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9
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
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
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6.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2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3
28.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23
29.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24
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4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5
3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6

33.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7
3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35.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3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9
3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30
3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0
3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1
4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4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정부입법 예고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12. 16. ● 마감일자 : 2020. 1. 28.
- 산림청 훈령에 있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림청 훈령에 있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안 별표)
 - 나. 훈령의 보전국유림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로 하면서 육상풍력 발전시설 설치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안별표 2항 나·라호)
 - 1) 경제림 육성단지내 인공조림지가 육상풍력 발전 사업면적의 10%미만인 경우 사용허가 가능
 - 2) 육상풍력 발전에 포함되는 숲길은 대체노선 확보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경우 사용허가 가능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12. 16. ● 마감일자 : 2020. 1. 28.
- 산림청장이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공표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육상풍력 발전시설 설치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안 제3조제6항)

1)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2)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

나. 별지 제13호서식(대부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사용허가서)의 계약서 조건 변경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2. 16.

● 마감일자 : 2020. 1. 28.

○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액 한도로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퍼센트를 신고 인등에게 지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안 제8조의2제3항)

1) 신고 또는 고발 1건당 신고 포상금 500만원 지급액 한도 삭제

2) 포상금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퍼센트로 하되, 신고포상금의 하한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4.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16.

● 마감일자 : 2020. 1. 28.

○ ‘도로교통협약 체결국 자동차’ 로 등록관청(시·도지사 등, 세관장 대행 可)으로부터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를 발급 받아 국내도로를 운행하는 일본 활어차 등의 운전자가 오폐수 방류, 과속, 신호위반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등록관청, 경찰공무원(운행표 회수에 한함) 등이 1년간 운행표발급(재발급 포함)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신설)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2. 17.
- 마감일자 : 2020. 1. 28.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4에 따라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가스관, 상수관, 송유관 등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이나, 기 훼손지인 도로에 유사한 공사방법으로 지하에 매설되는 하수도 사업은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추가(별표 4 비고 제4호마목)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관로시설(「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추가하고자 함

6.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2. 18.
- 마감일자 : 2020. 1. 28.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는 침해 유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사람 (안 제10조의2)

-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
- 나.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세부기준 마련 (안 제10조의9, 10, 11)
- 1)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과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관계기관을 정의하고, 법 제23조의4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조치 등을 신설
- 다. 의학용어 등 표준화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42조제7항)
- 1)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 마련 및 확산을 위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법 제86조(권한위임 및 위탁)에 따라 표준전담기관 지정·운영의 근거조항 신설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2. 18. • 마감일자 : 2020. 1. 28.
-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강화 및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방법, 연구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유공자 포상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한 경우에도 ‘설립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그 ‘대표자’ 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자의 성명’ 을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병기한다)’ 으로 지정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부터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참여자의 교육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제3항 및 제52조의2제3항 신설)

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별표 1])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2. 19. ● 마감일자 : 2019. 12. 30.
-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하여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될 예정임. 이에 법률 시행일(공포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규정의 법률 상향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률에서 위임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신설(별표)
 - 1) 환경부장관의 조치 요청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지사의 자동차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나.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13조 삭제)
 - 1) 현행 시행령 제13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각 호의 규정이 법률로 상향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2. 19. ● 마감일자 : 2020. 1. 28.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16476

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외국인의 해외 인수·합병 등의 승인 신청 및 신고대상 범위를 조정하며, 승인신청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 나.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기관의 범위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함(안 제13조의3)
- 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사항 중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분류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
- 라.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승인 및 신고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조정함(안 제18조의2)
 - 1)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현행 최다소유자의 요건을 삭제함
 - 2) 외국인이 주식등을 취득할 경우 지분율의 합산대상이 되는 관계인 중 혈족의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
 - 3) 외국인이 보유기관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도하여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승인 및 신고의 대상으로 추가함
 - 4)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보유기관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자산, 상품, 용역 등의 거래를 하면서 임원 선임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승인 및 신고의 대상으로 포함함
- 마. 해외인수·합병 등의 승인 신청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 바. 산업기술의 침해신고 관련 조사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해당 조사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10.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2. 19. • 마감일자 : 2020. 1. 29.
- 「석탄산업법」 제3조의2에 석탄산업장기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기 위함.

1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2. 19. • 마감일자 : 2020. 1. 29.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장의 신설· 증설 기준 등 (안 제3조)
 - 1) 기존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만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이었으나,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 지원의 폭을 넓히기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나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 8조 제 2항의 지식서비스산업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됨. 따라서 추가되는 업종의 “사업장의 신설· 증설” 기준 등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
 - 2) 제조업 외의 업종의 “사업장의 신설· 증설”에 대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신축, 신규임대, 신규설치 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거나 또는 사업장에 설치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를 증가시키는 경우”로 규정함.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 기준은 기존과 같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를 판단기준으로 하되, 지식서비스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가 아닌 「산업발전법」상 분류이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산업발전법」 제8조 제 2항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규정함

- 3)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해당 산업 영위 기업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신설(안 제5조)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마련 필요
- 2)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
- 3)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등 다양한 위원위촉이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한 정책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감면 기준 설정(안 제13조)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2, 법 제 13조의 3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감면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적용대상지역, 임대료산정기준, 임대료감면기준 등 마련이 필요
- 2) 임대 및 임대료 감면은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함. 토지 등의 임대료는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국내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 중 관리주체에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국유·공유재산의 소관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국내복귀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공

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 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 3)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대상 입지지원이 강화되어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및 해제 기준 설정(안 제13조의2)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및 해제 시 적용대상지역,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
- 2) 매각 및 해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함.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 납부는 국가 소유 토지등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에 대해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3) 국유·공유재산 매각 및 해제 기준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통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됨

1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12. 19. • 마감일자 : 2020. 1. 28.
-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해외여행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행사의 기획여행 실시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현재 국외여행인솔자가 자격 취득 시에만 받도록 되어있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여행사의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획여행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 함(안 제21조의2 신설)
 - 나. 현재 자격취득 시에만 받도록 되어있는 안전교육을 국외여행인솔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함(안 제22조 개정)

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 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2. 20.

• 마감일자 : 2020. 1. 30.

○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16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정보 공개 내용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 국내 식품관련 법령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입중단 또는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 (안 제3조 및 제14조)

1) 수입중단 조치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중단 조치일자 및 사유 등 정보공개の内容과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나. 영업자 보수교육 개선 (안 제23조)

1)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같음하고 있으나,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정밀검사 기간 명확화 (안 별표9)

1)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 또는 수출된 수입식품등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간을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주류에 대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요건 완화 (안 별표10)

1) 주류 중 포도주의 경우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 등이 같으면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포도주 외의 주류도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마.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 (안 별표 13)

- 1)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분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2)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함

1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20.

• 마감일자 : 2020. 1. 30.

- 건축물 마감재료는 품질시험 결과 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이 인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방화문의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안 제5조, 제6조, 제7조)

- 1)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 마감재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열방출량 등 일정 난연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도록 함.

나.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9조제4항, 제13조)

- 1) 재실자의 피난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범·사생활 보호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건축물 옥상을 대피 및 구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성능분류체계 개선 (안 제64조 등)

- 1) 현재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 분류체계를 60분 방화문 등 화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개선

1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20.

• 마감일자 : 2020. 1. 30.

- 건축물 옥상을 통한 건축물 이용자들의 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방화구획 등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방화문의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40조제3항 신설)

- 1)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범·사생활 보호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건축물 옥상을 대피 및 구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내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안 제61조제1항제8호)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화구획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성능분류체계 개선 등(안 제64조 등)

- 1) 현재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 분류체계를 60분 방화문 등 화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개선

16.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9. 12. 23. • 마감일자 : 2020. 2. 3.
- 단수여권 발급대상 예외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단수여권 발급대상 예외 범위 확대(안 제13조)
 - 1) 27세 이하의 경우 28세한도 최장 3년 복수여권 발급
 - 2) 28세 이상의 경우 1년 복수여권 발급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23. • 마감일자 : 2020. 2. 3.
-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9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됨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교지의 범위, 대학에 설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교육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을 추가(안 제2조의3)
 - 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학교지의 범위를 해당 교지의 면적을 제외하고도 대학설립·운영 규정 에 따른 교지의 기준면적을 충족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교지로 규정하고, 대학에 설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학생·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함(안 제47조의8 신설)
 - 다. 공공 외 사업시행자가 준공된 산업단지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법 제16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대학교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서 준공 후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4)

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대학의 교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4조의4제2항제 3호 신설)

18.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2. 24.
- 마감일자 : 2020. 2. 3.
-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을 위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구조로 개편하는 등 내용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19.2) 하였고, 본 계획에 따라 자원관리 기반으로 수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저지른 어업인에 대한 용자 제한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불법어업 시의 용자제한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1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12. 24.
- 마감일자 : 2020. 2. 3.
-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 견 수렴에 대한 대상 지자체역할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한 재정립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주관 지자체 폐지 (안 제143조 등)
 -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 지역내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면적이 넓은 지자체가 주관하던 현행 규정에서 ‘주관’을 삭제
 - 2)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내 모든 지자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

을 직접 수렴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나. 광역시장·도지사의 역할 부여 (신설)

- 1)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는 광역시장·도지사가 의견 수렴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2. 24. • 마감일자 : 2020. 2. 3.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장애등급 및 심리상담비용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타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 주요내용
 - 가. 장애등급 세부기준 마련
 - 1)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함(현행 제16조제5항 신설)
 - 2) 신체장애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수정(별표2 수정)
 - 나. 심리상담비용 지원 세부기준 마련
 -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 다. 조문 수정
 - 1) 상급병실의 의미를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서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수정(안 제14조 제1호 수정)
 - 2) 학교안전법 인용조문을 제25조제3항에서 제26조제3항으로 개정(안 제27조제6항 수정)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2. 24. • 마감일자 : 2020. 2. 3.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장애등급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청구인의 급여청구 절차의 편의성을 위한 청구방식 개선 및 근거가

되는 타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 세부기준 마련

- 1)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3과 같음
(안 제2조의5 신설)

나. 공제급여 청구서 개선

-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표시를 삭제하고, 청구서 서식에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구비서류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별지 제1호 서식 수정)

다. 조문 수정

- 1) 안전교육의 실시의 책무를 상위법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2조 제3항 수정)
- 2) 교육부령 [별표] 자. 중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보조기구”로 개정(별표 수정)

2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9. 12. 26.

● 마감일자 : 2020. 2. 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운영)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자원집결지 세부구성 마련을 통하여 대형재난 발생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전 소방청 긴급구조지휘대 현장출동 및 자원집결지 효율적 운영으로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단위 대형재난 발생 대비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지휘대의 운영주체 추가 및 지휘대원의 명칭 변경(안 제16조)

나. 대형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소방력 운용을 위한 자원집결지 내 반별구성 명칭부여(안 제18조)

다. 현장대응활동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원들의 세부임무 적시(안 별표5)

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2. 26. • 마감일자 : 2020. 2. 4.
- 현재 고시에 근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불법 유치행위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 위탁 사항으로 규정하여 업무 위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관의 유치기관 평가 업무의 재위탁과 관련한 재위탁 업무범위, 재위탁 기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불법유치행위 신고지원센터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개정)
 - 1) 현재 고시에 근거한 지원센터의 불법유치행위 신고지원 업무에 대해 시행령에 명시적 위탁근거 마련
 - 나. 유치 의료기관 평가업무 재위탁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 1) 업무 재위탁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위탁 필요사항 규정

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26. • 마감일자 : 2020. 2. 4.
- 캠핑용자동차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를 삭제하고,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 안전기준 등 마련(안 제18조의4제2항)
 - 1) 캠핑용자동차의 취침시설 기준,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확보를 위한 탈출구 기준, 주행 시 수납함의 열림 방지 등

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26. • 마감일자 : 2020. 2. 4.
- 캠핑용자동차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를 삭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화물·특수 자동차 상호간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튜닝 승인이 가능한 범위의 확대 및 튜닝부품인증의 대상이 되는 부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튜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캠핑용자동차를 규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정이며,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반영
 - 나.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 명확화(안 제55조제1항 단서)
 - 1)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포함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 다. 승차정원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허용범위의 확대 및 규정 정비(안 제55조제2항제2호)
 - 1)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총중량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라.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상호간의 자동차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을 허용(안 제55조제2항제3호)
 - 1)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을 제한하고 있으나, 화물·특수 자동차 상호간의 튜닝을 허용하여 튜닝 시장 활성화 도모

마. 튜닝부품인증의 대상 확대(현행 제56조의2제3항 삭제)

- 1) 튜닝부품인증의 대상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외의 부품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

바.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개선(안 제78조제1호)

- 1) 말소된 자동차의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사.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자동차의 정의에 맞게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명칭과 세부기준을 변경(별표 1)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정

아.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에 제작연월을 포함(별표 5)

-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정

26.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26.
- 마감일자 : 2020. 2. 4.

○ 건축사 자격시험을 2020년부터 연 2회 시행하여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응시생의 심리적 압박이 커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및 면제횟수를 5년 내 5회로 정하여 면제기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함. 또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시 수리간주제 도입 및 건축사 자격증 등록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 이 개정(' 18.12, ' 19.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개정 건축사법 에서 위임된 사항의 인용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 업무와 건축사 명부 관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건축사 자격시험, 자격등록 등과 함께 건축사 자격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12. 27. • 마감일자 : 2020. 2. 5.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19.12.3)에 따라 수입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검사기관 지정기준(안 제18조의4제1항)
 - 1) (인력) 관련학과 졸업 또는 산림관련 종목의 자격증을 가진 검사인력 3명 이상 확보
 - 2) (조직) 농임산물 유통관리, 농림업 조사연구 조직을 갖춘 기관
 - 나. 검사기관 지정결과 공개(안 제18조의4제2항)
 - 1) 검사기관 지정 지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신설

28.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2. 27. • 마감일자 : 2020. 2. 5.
-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안 제5조)
 - 1) 국산밀 신수요 창출 및 소비촉진, 밀 가공품 수출 촉진 등 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 나. 생산·유통단지 지정(안 제6조)
 - 1) 밀 품질관리 체계화 및 규모화·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요건을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등으로 설정함.

다.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안 제7조)

- 1) 밀의 구분 유통 및 품질제고를 위하여 밀 구분 저장시설의 설치, 특수목적용 소규모 제분 및 혼합 시설, 품질분석기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29.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2. 27. • 마감일자 : 2020. 2. 5.
-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계약재배 우선 지원 대상(안 제4조)
 - 1) 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규모화·집단화된 재배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을 준용하도록 함.
 - 나. 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방법(안 제5조)
 - 1)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품질기준 등은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운영하기 위하여 고시하여 정하도록 함.
 - 다.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등의 기준(안 제9조)
 - 1) 국산밀, 국산밀가루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외 국산밀 또는 국산밀가루를 일부 사용한 가공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고시로 설정하도록 함.

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2. 30. • 마감일자 : 2020. 2. 26.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 등으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 폐기물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 하여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안 별표 1, 별표 3)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2. 30. • 마감일자 : 2020. 2. 10.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요청 및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 가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14호, '19. 12. 3. 공포, ' 20. 6. 4. 시행)됨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5조의8)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과 여비 및 의견의 청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 마약류통합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 마련(안 제8조의2)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마약류통합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 다.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 가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8조 4 및 제8조의5)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마약류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정보의 제공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3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12. 30.

• 마감일자 : 2020. 2. 10.

○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및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제도 보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및 활용, 숲길 타당성 평가, 국가숲길 지정 및 예약탐방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기준, 숲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및 위탁, 국가숲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와 보호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시·군·구 지역주민 등에 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포방법(안 제3조)

1) 산림청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

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규정 삭제(안 제4조의3)

다. 산림휴양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번호 재지정(안 제4조의5, 제16조)

라.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신설(안 제5조)

1)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 및 자격기준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의2에서 규정

마.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9조의7)

1)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 1~3급)를 추가하고 입장료 면제 대상 지역주민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바. 숲길의 타당성 평가기준 및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 신설(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1) 숲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노선선정, 조성계획, 생태계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숲길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

업 중 종합업 또는 산림휴양업 등록자, 등산·트레킹 관련 비영리법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숲길의 타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규정

사.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신설(안 제11조의6)

1) 국가숲길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

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범위(안 제11조의11)

1)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위탁하는 사업범위를 확대

33.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2. 30. • 마감일자 : 2020. 2. 10.

○ 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승인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윤리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제기구’를 추가(안 제4조)

1)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대한민국 영토에 동물실험을 위한 연구소를 가지고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포함.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안 제12조)

1) 윤리위 심의의 전문성을 위해 윤리위 구성 시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수의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동물실험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심의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수의사가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에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또한 동물실험의 지속적 증가로 윤리위 위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윤리위 위원의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나, 그 중요성에 비해 행정전문인력의

채용에 관한 법적 의무는 없어 그 법적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다.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제20조 제1항, 별표 제2호)

- 1) 「동물보호법」(시행 ‘20.3.21) 개정안의 위입사항을 구체화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30. • 마감일자 : 2020. 2. 10.
-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규정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간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온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를 시행령 제13조의8 제4항 및 제5항으로 신설하여 규정
 - 나. 그 간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온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령 별표 1. 비고 라항 삭제

35.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30. • 마감일자 : 2020. 2. 10.
- 현행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대책 수립 기준 이하의 사업 분할 개발 등의 방법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고 주변지역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규모를 현행 “사업면적 100만 제곱미터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 에서 “사업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 으로 조정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적정 광역교통시설 설치 등으로 주변 지역 교통혼잡 완화 및 입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시행령 제9조제1항)

3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2. 31.
- 마감일자 : 2020. 2. 10.

○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낸 모집자가 모집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고,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이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안 제19조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 1) 종전에는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 2) 기부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별도 공개서식(신설)을 제공하거나 기 작성·공시한 자료로 안내하도록 함.

나. 등록청 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 1)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 및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무 또는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12. 31. ● 마감일자 : 2020. 2. 10.
- 중소기업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19.12.10. 공포, '20.6.10.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중소기업 범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관련된 독립성 기준)을 삭제(안 제3조)
 - 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단서조항(공시대상기업집단 배제)에 맞추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삭제
 -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제2호의 제3조제1항제2호가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 제2조제1항 단서(공시대상기업집단)로 변경(안 제9조)
 - 1) 법 개정으로 인해 법 제2조제1항 단서가 신설되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시행령 제9조제2호)을 변경

3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12. 31. ● 마감일자 : 2020. 2. 10.
- 주요내용
 - 가. 산림휴양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번호 재지정(안 제12조)
 -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고 절차 및 관련 서식과 양

성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추가(안 제12조의3)

-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의 지정 변경신고 요건 규정 및 변경신고 절차 와 서식 추가
- 2)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내용 추가

다.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 발급절차 신설(안 제12조의4)

- 1)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시 신청서류 규정
- 2)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후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
- 3)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시 신청서류 규정

라.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신설(안 제12조의5)

- 1)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레포츠시설에서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

마. 숲길의 타당성 평가절차 신설(안 제20조의2제2항)

- 1) 타당성 평가 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숲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절차 마련

바. 국가숲길의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절차 신설(안 제20조의3)

- 1) 국가숲길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마련

사. 숲길 예약탐방제 고시 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 1) 숲길의 예약탐방제 실시에 따른 숲길의 명칭, 위치, 거리, 목적,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고시 할 사항 규정

아.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고시 조항 신설(안 제26조)

- 1)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레포츠 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3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2. 31.

● 마감일자 : 2020. 2. 10.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조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준수율 조사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의 인용 조항 수정 및 준수율 자구 추가(안 제3조제1항)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규정 신설, 같은 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의 인용 조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변경 및 준수율 자구 추가

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용 조항 수정 (안 제4조)

-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규정이 삭제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되어, 인용 조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변경

4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31.
- 마감일자 : 2020. 2. 10.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고,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 최장 10년까지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 이상으로 강화(안 제4조 및 안 34조)

나.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강화(안 제56조)

다. 당첨되는 주택의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되도록 강화(안 제54조)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31. ● 마감일자 : 2020. 2. 10.
-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6635호)이 개정되어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을 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진흥원을 추가하는 한편,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등 법령체계 및 내용상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 규정(안 제12조의4 신설)
 - 1)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지급 등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범위를 규정하고 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안유지·관리를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나. 타 조항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 1)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의 사망보험금 한도금액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가불금 한도금액도 동일하게 상향하고자 함.
 - 다. 법으로 이관된 시행령 조항 삭제(안 제18조)
 - 1)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시행령에 규정하던 것을 법에 상향하여 시행령 삭제
 - 라.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안 제30조제2항)
 - 1) 「보험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외국보험 사업자’ 라는 용어가 ‘외국보험회사’ 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4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31.
 - 마감일자 : 2020. 2.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8개동 및 중구 7개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배출등급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서울특별시장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25만원 부과중)하고 있으나, 타법에 의한 유사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